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2. 9 선고 2019가단579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온성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1. 2. 9.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9. 2. 26.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9.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2. ‘C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7가단55372)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2. 27.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9. 2. 2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2. 27. 피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을 해주었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59,205,727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2억 원을 상회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상태였다.

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3. 피고에게 49,636,9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신청한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카단11005호)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4,620만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의 재산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표까지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인 C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현덕

별지

1)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변경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